##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910

발의연월일: 2024. 11. 27.

발 의 자: 한정애·김성회·이학영

추미애 • 박홍근 • 양문석

조정식 · 권향엽 · 김교흥

서영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배출과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도 분석하도록 하는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하여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됨.

이에 결산보고서에 첨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 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명칭을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에 맞춰 수정하 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5 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1호) 및「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9호)의 의결을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위기대응"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위기대응 결산서 및 기후위기대응 기금결산서의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
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	류) ①
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	
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u>온실가스감축인지</u> 결산서	7의2. <u>기후위기대응</u>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②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u>온실가스감축인지</u> 기금결	2의2. <u>기후위기대응</u>
산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⑤
결산서,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	
른 <u>온실가스감축인지</u> 결산서,	<u>기후위기대응</u>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	
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	
에 따른 <u>온실가스감축인지</u> 기	<u>기후위기대응</u>
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